

한경국립대학교 겸임교원 등의 인사에 관한 규정

- (규정 제4호) 제정 2023. 3. 1.
- (규정 제109호) 개정 2023. 7. 19.
- (규정 제194호) 개정 2025. 2. 11.
- (규정 제223호) 개정 2025. 7. 14.
- (규정 제228호) 개정 2025. 10. 2.
- (규정 제255호) 개정 2026. 6. 8.
- (규정 제267호) 개정 2026. 7.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제9조에 따라 임용하는 석좌교수, 명예교수, 기금교원, 겸임교원, 객원교수, 초빙교원, 특임교수, 연구교수,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개정 2026. 6. 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좌교수"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교육과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2. "명예교수"란 한경국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전임 교원으로 재직 후 퇴직한 사람 중에서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하여 추대된 사람을 말한다.
3. "기금교원"이란 개인, 단체, 외부기관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교육·연구·산학협력 분야에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4. "겸임교원"이란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5. "객원교수"란 대학에서 정하는 특강 또는 세미나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6. “초빙교원”이란 국가기관,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 중에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7. “특임교수”란 특별강의, 세미나, 학교발전에 대한 자문, 산학협력, 대외 활동 등 본교가 지정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8. “연구교수”란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산학협력단 회계를 재원으로 연구(사업)과제 수행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비전임으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
9.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중교수”라 한다)”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산학협력단에 회계를 재원으로 국책(연구)사업 또는 산학협력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비전임으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6. 8.>

제3조(정년) 명예교수를 제외한 겸임교원 등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학기 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기말로 한다. <신설 2023. 7. 19.>

제4조(적용범위) 본교 겸임교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석좌교수

제5조(자격) 석좌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특정 학문 또는 전문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
2.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을 수상한

사람

제6조(임용) ① 석좌교수는 총괄학부장 또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② 총장은 추천된 사람의 자격, 학문업적 등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③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은 제3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임무) ① 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대학원 강의 및 연구

2. 특별 강의 및 세미나

3. 그 밖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② 석좌교수는 임용기간 중 발표되는 논문 및 학술활동에서 본교 석좌교수임을 밝혀야 한다.

제8조(처우 및 제한) ① 석좌교수의 보수는 계약으로 정한다.

② 외국인 석좌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외에, 항공료, 체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석좌교수는 교수회의, 학부회의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명예교수

제9조(자격) ①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본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 또는 전임교원으로 재직 한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고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없다. <개정 2026. 7. 6.>

1. 중징계 처분을 받고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6. 7. 6.>

2. 본교 자체학술연구과제 또는 연구년제 연구결과물 미제출자 <개정 20

26. 7. 6.>

1. 삭제 <2025. 7. 14>

2. 삭제 <2025. 7. 14>

제10조(추대) ① 명예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퇴직 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총괄학부장에게 명예교수 추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징계 처분이 말소되거나 사면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7. 6.>

② 총괄학부장은 추대 자격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6.>

1. 명예교수 추대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명예교수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명예교수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조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교수를 추대한다.

④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교수 자격이 있는 자가 총장으로 퇴직하였거나, 명예교수 추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명예교수의 임기는 종신으로 하며, 사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6. 7. 6.>

제12조(임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전공분야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하거나, 퇴직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비 또는 강의료의 지급) 명예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또는 「한경국립대학교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추대 철회) 총장은 명예교수가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교수 추대를 철회할 수 있다.

제4장 기금교원

제15조(기금교원별 정의) ① 기금교원별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기금교원이란 교육, 학생지도 및 학문 연구를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전담 기금교원이란 교양과정, 전공과정 또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분야의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산학협력 기금교원이란 학생을 교육, 지도하면서 취업, 홍보, 산학협력 등의 전문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임 기금교원이란 총장이 부여하는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② 기금교원의 명칭은 기금출연자가 지정하는 명의를 그 앞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자격) ① 기금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임 기금교원은 예외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외국인, 예·체능계, 건축학 또는 조경학 관련 학부(전공)의 설계분야 및 그 밖의 특수 분야는 석사학위 소지자

② 제2호의 특수 분야 인정여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신규채용) ① 기금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분야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탁월하여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은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다만, 특임 기금교원은 특임 기금교원 운용부서의 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한다.

② 기금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되,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기금교원의 신규채용 시 직명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기금교수, 기금부교수, 기금조교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임 기금교원의 직명은 특임교수로 한다.

④ 기금교원의 임용일은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하며,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은 채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임용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임용) ① 기금교원은 교육실적, 연구실적, 대학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임 기금교원은 특임 기금교원 운용부서의 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 할 수 있다.

② 기금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금교원 재임용 심사평정표에 의거, 총장이 임명한 5명 이내의 전임교원이 실시한다.

③ 기금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1. 제2항의 재임용 심사평정 결과 평정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D가 2개 이상인 경우

2.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④ 기금교원에 대한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률에 필요한 사항은 「한경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금교원의 재임용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재임용은 2회까지 가능하다.

제19조(임무) ① 기금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지도 및 학문 연구

2. 산학협력 등 전문분야 업무 수행

② 기금교원은 임용기간 중 발표되는 논문 및 학술활동에서 본교 기금교원임을 밝혀야 한다.

③ 기금교원의 주당 책임교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거나 감면 할 수 있다.

1. 일반 기금교원: 9시간
2. 교육전담 기금교원: 15시간
3. 산학협력 기금교원: 6시간
4. 특임 기금교원: 3시간

제20조(처우 및 제한) ① 기금교원의 보수는 계약으로 정한다.

② 기금교원이 주당 책임교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한경국립대학교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라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③ 기금교원은 교수회의, 학과(부)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기금교원은 총장의 승인 없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등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1조(복무) 기금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면직) 총장은 기금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법령, 규정 또는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교육, 연구 및 담당업무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본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6. 임용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기금이 기금교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한 경우

제5장 겸임교원

제23조(자격)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4조(신규채용) ①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② 겸임교원의 심사평정표는 별지 제15호에 따른다.

제25조(재임용) ① 겸임교원은 자격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의 재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총 임용가능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겸임교원 재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겸임교원 임용추천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2. 겸임교원 활용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3. 본인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4. 본직 기관장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5. 재직증명서 1부
6.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26조(임무) ① 겸임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대학원 강의
2.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3. 본교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4. 그 밖에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② 겸임교원의 주당 책임교수시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경국립대학교 강사 채용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제27조(처우) ① 겸임교원에게는 정해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제28조(면직) 총장은 겸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하여야 한다.

1.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2. 제26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해당 학부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장 객원교수

제29조(자격) 객원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또는 유사 전공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또는 유사 전공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또는 유사 전공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제30조(신규채용) ① 객원교수는 학부장, 대학원장 및 부속시설의 장의 추천으로 임용한다.

② 객원교수 신규채용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원교수 임용추천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2. 객원교수 활용계획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3. 이력서 1부
4.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1부
5.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③ 총장은 객원교수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임용한다.

④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1조(재임용) ① 총장은 객원교수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② 객원교수의 재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총 임용가능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객원교수 재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원교수 임용추천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2. 객원교수 활용계획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3.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외국어는 번역문 포함) 1부
4.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32조(임무) 객원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강 및 세미나 등
2. 본교 교원과의 공동연구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제33조(보수) 객원교수의 보수는 계약에 의한다.

제34조(면직) 총장은 객원교수가 제32조(임무)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직할 수 있다.

제7장 초빙교원

제35조(자격) ① 초빙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조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
2.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6조(신규채용) 초빙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제37조(재임용) ① 초빙교원은 교육실적, 본교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 할 수 있다.

② 초빙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초빙교원 재임용 심사평정표에 의거, 총장이 임명한 5명 이내의 전임교원이 실시한다.

③ 초빙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1. 제2항의 재임용 심사평정 결과 평정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D가 2개 이상인 경우
2.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④ 초빙교원 재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교원 임용추천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2. 초빙교원 활용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3. 초빙교원 근무실적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4.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⑤ 초빙교원의 재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총 임용가능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학위 소지자 : 5년
2. 학사·석사학위 소지자 : 2년
3. 외국인 : 5년(총 임용가능 기간 연장 가능)
4. ROTC 소속: 5년

제38조(임무) ① 초빙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대학원 강의
2. 특별 강의 및 세미나
3.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
4.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5. 본교가 지정하는 연구과제 수행
6. 그 밖에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업무

② 초빙교원의 주당 책임교수시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경국립대학교 강사 채용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제39조(처우) ① 초빙교원의 보수는 계약으로 정하며, 외국인인 초빙교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용 시설 및 국제 항공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인 초빙교원은 본교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 허가 없이 입국
목적 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0조(복무) 초빙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을 준용한다.

제41조(면직) 총장은 초빙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법령, 규정 또는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교육 및 담당업무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본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6. 임용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제8장 특임교수

제42조(자격 및 직무) ① 특임교수는 산업체 및 공공기관 또는 전문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 중에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
로 하며, 학력 및 경력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특임교수는 특별강의, 세미나, 학교발전에 대한 자문, 산학협력, 대외활
동 등 본교가 지정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3조(임용) ① 특임교수는 학부장, 대학원장 및 부속시설의 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26. 6. 8.>

② 특임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본교가 지정한 특별한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

지로 한다.

제44조(처우) 특임교수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계약에 따라 보수, 경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8.>

제9장 연구교수 <신설 2025. 10. 2.>

제45조(자격) 연구교수는 박사학위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하되 세부자격기준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6. 8.>

제46조(임용) ①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제20조의 산학협력단 산하에 두는 연구소 및 센터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총장은 제45조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를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26. 6. 8.>

제47조(임무 등) 연구교수의 임무, 보수, 복무, 징계, 면직, 처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6. 8.>

제10장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신설 2026. 6. 8.>

제48조(자격) 산중교수는 학사학위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하되 세부자격기준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임용) ①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제20조의 산학협력단 산하에 두는 연구소 및 센터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중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총장은 제48조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를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

제50조(임무 등) 산중교수의 임무, 보수, 복무, 징계, 면직, 처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4호, 2023.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한국복지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겸임교원, 초빙교원, 특임교수,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이 규정에 따른 한경국립대학교 소속 겸임교원, 초빙교원, 특임교수, 석좌교수, 명예교수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09호, 2023.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6호, 2025. 2.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3호, 2025. 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8호, 2025. 10.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4호, 2026. 6.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7호, 2026.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추대된 명예교수는 이 규정에 따라 추대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7. 6.>

명예교수 추대 신청서

본인은 한경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추대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퇴직 전 소속 학부(전공)	
----------------	--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사 진 (반명함)
생년월일		
주 소	우(-)	
E-mail 주 소		
연 락 처		

2. 주요 경력

[illegible]

3. 주요 연구실적물

심사 우선 순위	*구분	제 목	발 표 연월일	발 표 지 명	저자수
1					
2					
3					
4					
5					
6					
7					
8					
합 계					

- 1) 구분 : 논문, 저서, 특허 등으로 반드시 기재
- 2) 비고 : 논문의 경우 SCI급, 국외, 한연등재, 한연등재후보, 논문집 등 반드시 해당 내용 기재
- 3) 발표지명 : OO학회지(OO학회) 등으로 발표지와 발표기관을 모두 기재
- 4) 특허는 출원 중인 것은 제외하며 발표 년월일에는 반드시 등록일자를 기재
- 5) 각종 학술발표 대회(컨퍼런스, 프로시딩 등)에 발표된 논문, 저서 중 편저 · 번역서 등은 미인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7. 14.> <개정 2026. 7. 6.>

명 예 교 수 추 천 서

대 상 자 인 적 사 항					
퇴직 전 소속학부(전공)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자		퇴직일		본교재직년수	년 월
임 용 사 항					
임용직위	명예교수		임용일자		
추천의견 (※ 본교 발전 공헌 및 교육학술상 업적 개요 포함 2페이지 이내) 위와 같이 명예교수를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 총괄학부장 ○○○ (인)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 7. 6.>

명예교수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조서

① 성 명	(한 자)
② 소 속	
③ 학력 사항	
④ 주요경력사항	
⑤ 수상 및 표창	
⑥ 학술활동	학회 활동 또는 학술 논문 등
⑦ 저서	
년 월 일	
추 천 자	직 위 총괄학부장 성 명 ○○○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기금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인 적 사 항	소속학부					직명		
	성 명							
평정영역	평정기준					배점	평 점	평 정 방법
1. 교육실적	강의평가							▶ (재직기간 강의평가 평균)*4(7,2) ¹⁾
	강의충실도 등							▶ 분강도, 강의계획서, 성적입력, 교과목 포트폴리오 등 평가
	S	A	B	C	D			
	10	8	6	4	2			
	25	20	15	10	5			
2. 연구실적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연구실적 평가							▶ (총연구실적-100)/10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해당교원별 배점을 상한으로 함.
3. 품위유지	S	A	B	C	D			▶ 인격과 품위, 교직원 인화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10	8	6	4	2			
4. 본교 발전기여도	S	A	B	C	D			▶ 본교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
	20	16	12	8	4			
5. 근무자세	S	A	B	C	D			▶ 성실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10	8	6	4	2			
계						100		
가감점	포상: 10점 징계: -10점					합계		

※ 주1) 일반, 교육전담, 산학협력기금교원에 따라 각각 4,7,2의 가중치를 부여

※ 평가기간 중 강의평가 점수가 경우 1. 강의평가 영역은 평가하지 아니함.

※ 기금교원별 배점표

구분	배점					
	1.교육실적		2.연구 실적	3.품위 유지	4.대학발 전기여도	5.근무 자세
	강의평가	강의충실도 등				
일반기금교원	20	10	30	10	20	10
교육전담기금교원	35	25	0	10	20	10
산학협력기금교원	10	10	40	10	20	10

※ 평정결과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D가 2개 이상일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함.

20 년 월 일

평정위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겸임교원 임용 추천서

○ 대상자 현황

소속 및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기 관 명	직위			
				20 . . . - 20 . . . (년 월)
최종 학력				채용 구분
대학(원)명	학위	전공		
				재임용

위 사람을 본 학부(전공) 겸임교원으로 임용하고자 관련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20

() 학 부 장 ○ ○ ○ (인)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겸임교원 활용 계획서

1. 겸임교원 활용계획

학 부	성 명	최종학위 전공	강의과목		비고
			과목명	교수시간	
			소계(3시간 이상 필수)		

2. 겸임교원 활용 계획 내역(해당 내용 기재)

구분		내용	비고
교육과정 개발			
위탁교육 강의			
전공관련 교과목 강의·실습	강의		필수기재
	실험실습		
공동연구			
학생지도			
기 타			

위와 같이 겸임교원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학 부 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본 인 동 의 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겸임교원 임용 예정 기간	20 . . . ~ 20 . . . (년 월)			
본 직 기관	기관명		직위	
	주소			

본인은 귀 대학교의 겸임교원 임용에 동의합니다.

20

신청자 : (인)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본직기관장 동의서

본 직 기 관			
기 관 명			
업종 및 업태		연 락 처	☎ : () - FAX : () -
주 소			
겸 임 교 원 예 정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본 직 기 관 직위 및 직책		본 직 기 관 담당 업무	
겸임교원 임용 동의 기간	20 . . . ~ 20 . . (년 월)		

우리 기관의 (성명) 지원자명 을 위와 같이 귀 대학교의 겸임교원으로 임용함에 동의합니다.

20

기 관 장 : (인)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객원교수 임용 추천서

○ 대상자 현황

소속 및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기 관 명	직위			
				20 ~ 20 (년 월)
최종 학력			채용 구분 (O표시)	
대학(원)명	학위	전공		
				신규채용, 재임용

위 사람을 본 학부(전공) 객원교수로 임용하고자 관련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20

() 학 부 장 ○ ○ ○ (인)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귀하

객원교수 활용 계획서

1. 객원교수 활용계획

학 부	성 명	최종학위 전공	활용계획	비고
			☐ 특강 및 세미나 등 ☐ 본교 교원과의 공동연구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활동 등 ※ 해당 영역에 체크	

2. 객원교수 활용 계획 내역(해당 내용 기재)

구분	내용	비고
특강		
세미나		
공동연구		
기 타		

위와 같이 객원교수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학 부 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초빙교원 임용 추천서

○ 대상자 현황

소속 및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임용기간
기관명	직위			
				20 . . . - 20 . . . (년 월)
최종 학력			채용 구분	(재임용)
대학(원)명	학위	전공		

위 사람을 본 학부(전공) 초빙교원으로 임용 하고자 관련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20 . . .

() 학 부 장 ○ ○ ○ (인)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귀하

초빙교원 활용 계획서

1. 초빙교원 활용계획

학 부	성 명	최종학위 전공	강의과목		비고
			과목명	교수시간	
			소계		

2. 초빙교원 활용 세부계획

※ 강의,실습, 학생지도, 연구과제 수행, 기타업무 등을 자세히 기재

위와 같이 초빙교원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학 부 장 (인)

[별지 제13호 서식]

초빙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인 적 사 항	소속학부					직명				
	성 명									
평정영역	평정기준					배 점	평 점	평 정 방 법		
1. 교육실적	강의평가							▶ (재직기간 강의평가 평균)*6		
	강의충실도 등							▶ 분강, 강의계획서, 성적입력 등 평가		
	S	A	B	C	D					
	20	16	12	8	4					
2. 근무실적	주요업무 실적							▶ 담당업무의 효율적 처리 등 업무추진 실적 평가		
	S	A	B	C	D					
	20	16	12	8	4					
3. 품위유지	S	A	B	C	D					
	10	8	6	4	2					
4. 본교 발전기여도	S	A	B	C	D					
	30	24	18	12	6					
5. 근무자세	S	A	B	C	D					
	10	8	6	4	2					
계						100				
가감점	포상: 10점 징계: -10점					합계				

※ 평정결과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D가 2개 이상일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함.

※ 초빙교원별 배점표

구분	배점					
	1.교육실적		2.근무 실적	3.품위 유지	4.대학발전 기여도	5.근무 자세
	강의평가	강의충실도 등				
강의를 담당하는 초빙교원*	30	20	0	10	30	10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초빙교원	0	0	40	10	40	10

*평가기간 중 강의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1. 강의평가 영역은 평가하지 아니함.

20 년 월 일

평정위원: 소속

직명

성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초빙교원 근무실적서

▣ 평정대상기간

성명	소속학부	직명	생년월일	본교임용일	재임용예정일

1. 강의실적

구분	교수시간	과목수	과목내역	비고

2. 주요업무 실적

3. 학술활동 실적

※ 첨부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1) 과목별 강의계획서 및 강의자료 각 1부
- 2) 주요업무 추진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3) 학술활동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제출자 : 직명: 성명 : (인)

확인자 : 학부장 : (인)

기 초 · 전 공 심 사 표

접수번호		모집단위	
------	--	------	--

소속전공		심사위원	(서명)
------	--	------	------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비고
① 전공적합성	우수	20~15		
	보통	14~7		
	미흡	6~0		
② 실무관련성	우수	30~21		
	보통	20~11		
	미흡	10~0		
③ 실무경력	8년 이상	10		
	5년 이상	7		
	3년	4		
④ 강의역량	우수	20		
	보통	17.5		
	미흡	15		
	매우미흡	12.5		
⑤ 연구실적	2편 이상	20		
	0편~1편	15		

※ 평가위원 5명인 경우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평가위원이 3~4명일 경우 평가위원점수 모두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불합격기준) 전공적합성 또는 실무관련성에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미흡을 부여한 경우